아파트 생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생활]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나 사용자가 아파트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위생 등(금연구역, 쓰레기 배출 등), 아파트 생활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및 교통사고 등), 층간소음 등 문제,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관리 등 아파트 생활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1
1. 아파트 생활 개관 4
1.1. 개요 4
1.1.1. 아파트 4
2. 아파트 위생 등 7
2.1. 금연구역 지정 등 7
2.1.1. 단지 내 흡연금지 7
2.2.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9
2.2.1.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9
2.3. 반려동물 10
2.3.1.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0
3. 아파트 생활 안전 13
3.1. 어린이놀이시설 13
3.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13
3.2. 엘리베이터(승강기) 14
3.2.1. 승강기 안전 14
3.3. 교통사고 17
3.3.1. 단지 내 교통사고 17
3.4. 화재 20
3.4.1. 화재보험 등 20
4. 아파트 층간소음 등 24
4.1. 층간소음 24
4.1.1. 층간소음 등 문제 해결 24
4.2. 외부소음 26
4.2.1. 생활소음 27
4.2.2. 이동소음 28
5.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29
5.1.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29
5.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29
5.1.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등 30

1. 아파트 생활 개관

1.1. 개요

1.1.1. 아파트

아파트 개념

"아파트"란?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다만,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 관리규약 준칙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 작성 범위

작성 범위

▪ 아파트에서 생활을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을 아파트 입주(분양계약·하자 등), 아파트 관리(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파트 생활(단지 내 사고 및 층간소음 등)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 아파트 입주(분양계약·하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아파트 관리(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위생 등

▪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 아파트 위생(금연구역,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반려동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안전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아파트 생활 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교통사고 및 화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생활 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등

▪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과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및 해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층간소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위생 등

2.1. 금연구역 지정 등

2.1.1. 단지 내 흡연금지

금연구역 지정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지정 절차

금연구역 지정 절차

절차	내용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간접 흡연의 방지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전단).

>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2.2.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2.2.1.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아파트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Q.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쓰레기 배출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건물 위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반려동물

2.3.1.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아파트 관리규약 확인

관리규약 확인

▪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그 밖에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Q.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토끼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A.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동의 기준은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3호·제6호).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3. 아파트 생활 안전

3.1. 어린이놀이시설

3.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의무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전단).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위반 시 제재

▪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9).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본문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위반 시 제재

▪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엘리베이터(승강기)

3.2.1. 승강기 안전

승강기 개념

"승강기"란?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관리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설치·정기·수시정밀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함)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검사종류	내용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 및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의 경우는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수시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함, 이하 같음)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의 '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위의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제7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8호).

※ "안전검사"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7호).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제14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5호).

승강기 사고 책임

손해배상 청구

▪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구분	승강기의 사고처리 절차
사고 보고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	
사고 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4항, 제78조제2항제8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9호).

※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교통사고

3.3.1. 단지 내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여부

「도로교통법」의 적용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내 주차장 음주운전

Q.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를 배제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1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참조).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교통사고 책임 등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형법」 제266조제1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 · 운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도로 안전관리 관련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4. 화재

3.4.1. 화재보험 등

소방시설 등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 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파트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호)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아파트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하 **특수건물 중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아파트(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특수건물: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화재보험 가입

보험 가입 의무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특약부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화재보험금 지급 등

보험금액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구분		
화재보험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험금 청구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 청구액과 지급액
-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4. 아파트 층간소음 등

4.1. 층간소음

4.1.1. 층간소음 등 문제 해결

층간소음 개념

"층간소음"이란?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

▪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

Q.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A.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아파트 소음기준 및 방음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

※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고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Q. 아파트 위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4.2. 외부소음

4.2.1. 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이란?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규제대상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개념

"이동소음"이란?

▪ “이동소음”이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의 규제 등

규제대상

▪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규제방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 이동소음 규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5.1.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5.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의무설치 대상

▪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위반 시 제재

▪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제8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설치 절차

▪ 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
>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CCTV 녹음기능 처벌 여부

Q. 상대방 모르게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 솔로몬의 재판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234호, 2023. 3. 14.개정, 2023. 9. 15.시행)의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